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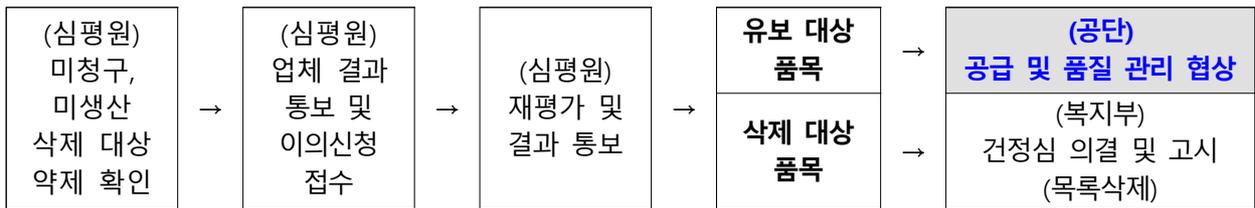
미청구·미생산 삭제유보 품목 영양급여관련 협상 예정 안내

□ 개요

- (관련 근거) 국민건강보험 영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7항
- (협상 대상) 2022년 하반기 미청구·미생산 삭제 대상 품목 중 삭제 유보된 약제 약 150 품목

□ 협상 내용 및 절차

- (내용)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
※ 국민건강보험 영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7항제4호
- (절차) 협상명령(10.14. 예정), 협상기간 약 60일
※ 협상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



□ 준비 사항

- 명령 기한 내 협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 사전 준비
 - (발급서류) 법인인감증명서, 사용인감계, 품목허가증, 약제 공급 계획서, 공급 증빙 서류
 - (공단양식) 협상품목 확인서, 협상단 통보서, 위임장, 비밀유지 각서
- ※ 협상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협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업체로 안내문서 발송 예정